

사 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고 발 인 정치하는엄마들

피고발인 조선일보 편집인 외

## 고 발 장

2023. 10. 06.

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권은숙, 박민아, 서성민

경찰청 귀중

# 고 발 장

고 발 인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4층 NGO 펼침터 402호(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

공동대표자 권은숙, 박민아, 서성민

(본 고발 담당자 및 연락처 서성민 010-0000-0000)

피고발인<sup>1)</sup>

1. 조선일보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2. 중앙일보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3. 동아일보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4. 한겨레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5. 경향신문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6. 매일경제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7. 한국일보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8. 살구뉴스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인)
9. 뉴스어몽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인)
10. 아티브뉴스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

1) 각 피고발인들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상의 해당보도에 대한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저작자와 발행인)

11. MBC 뉴스데스크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
12. SBS 8뉴스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
13. KBS 뉴스광장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
14. JTBC 뉴스룸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
15. MBN 뉴스7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
16. 채널A 뉴스A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
17. TV조선 뉴스9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
18. 연합뉴스TV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
19. YTN뉴스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

## 고 발 취 지

각 피고발인들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35조 제2항, 제62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의 혐의로 각 고발하오니 각 피고발인들을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이 유

## 1. 당사자의 지위

고발인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함 등을 목적으로 창립되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본 고발인은 과거 유사사안으로서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방송한 SBS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21. 1. 2. 자 방영분 「00이는 왜 죽었나? -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편, 2021. 1. 23. 자 방영분 「00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을 각 방영하며 피해아동의 성명, 나이, 용모, 그 밖에 피해아동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 한 것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위 제작진의 혐의가 인정된바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초 수사를 담당한 경찰과 담당 지방검찰청의 부당한 수사가 최종적으로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절차를 통해 바로잡혔는바, 이에 관하여 다음항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는 별첨 참고자료(이 사건 피고발인들과 같은 방송사 외에 청소년성보호법상

금지되는 비밀누설을 한 단체에 대한 내용을 포함)를 통해 그 경과와 기존 경찰, 검찰의 수사미진과 법리오해 부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시정되었는지를 파악·이해하여 주시고 본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는 잘못된 법리(예컨대, 각 피고발인들의 범행에 대한 구성요건의 자의석 해석,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위법성 조각 판단 등)를 적용하거나 수사를 미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참고자료 1. : SBS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부터 최종 검찰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각 결정통지 및 이유, 고발인의 이의 및 항고에 관한 고발자료 일체, 참고자료 2. 아동학대 관련 단체 및 대표자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부터 최종 검찰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각 결정통지 및 이유, 고발인의 이의 및 항고에 관한 고발자료 일체]

이 사건 피고발인들은 각 별지 기재에 표기된 방송 또는 보도에서 아동학대 처벌법을 위반하여 ‘용인 장애아동학대 사건’ (이하, ‘이 사건 아동학대 사건’ )에 관하여, (1)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하고,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신고인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 (2) 피해아동의 주소, 성명, 나이, 용모, 그 밖에 피해아동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 (3) 아동학대행위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아동학대 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

에 신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각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들입니다.

## 2. 본 고발의 취지 및 의미

### 가. 각 피고발인들 범행의 아동학대처벌법상 구성요건 해당성

피고발인들이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하고, 신고인의 성명, 용모, 그 밖에 신고인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 또는 보도하거나,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명, 나이,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 또는 보도하였다면, 이는 모두 아동학대처벌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어떠한 이유로든 절대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고발인이 참고자료를 통해 유사사건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잘못된 법리적용과 수사미진의 점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언론들의 이러한 명확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 노출의 불가피성’, ‘가명을 사용하여 인적사항 노출을 방지하고자 노력한점’, ‘공익적 목적이 있는점’, ‘피해아동의 사망으로 비밀엄수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SBS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이유 내용)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거나, ‘아동학대

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는 이유 (SBS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에 대한 서울서부지검의 불송치이유 내용)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sup>2)</sup>고 보았으나, 모두 잘못된 법 적용 또는 부당한 해석이었음이 확인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각 피고발인의 혐의가 인정되었음을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특히, 경찰은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면제사유가 아님에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피고발인 방송편집책임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검찰은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사건이 아닌 사건에도 아동학대 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었음에도, 위 유사사건에서는 선택적으로 이를 불기소를 했던 부당성이 드러난 사실이 있기도 한 바,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하고, 신고인의 성명, 직업, 용모, 그 밖에 신고인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 또는 보도하거나,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 또는 보도하였다면, 어떠한 이유로든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나. 아동보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

2)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가4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0고정409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에 의하더라도 '아동보호사건과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의 의미는 '실제로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보호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자료 1 중 기소유예처분 이유서 참조)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4조 제3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를 특별히 천명하고 있고, 따라서, 국가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이들의 건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의 하나이다(헌재 2021. 3. 25. 2018헌바388 참조).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보호에는 학대 그 자체로부터의 직접적 보호 뿐만 아니라 학대사건의 처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원 및 사생활 노출 등 2차피해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하면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 등의 노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생활 노출 등과 같은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경우만 포함되고, 통계상으로도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 친인척, 그 밖에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는자인 경우가 90%이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는 그 행위자의 피보호자로서 이미 긴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아동의 대외적 식별이나 사생활 노출 등 2차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판단하며, 아동학대행위자와 피

해아동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였는바, 결국 아동학대처벌법상의 보도나 공개가 금지되는 신고인,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아동학대행위자 등은 아동의 보호·양육·교육과 관련해 모두 아주 가깝게 맞닿은 관계에 있기에, 누군가가 공개될 경우 다른 사람 역시 인적 사항 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모두 아동학대 및 2차 피해로부터 피해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지 못할 위험에 기여하므로, 이들 모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관심이 된 사건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고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하고, 신고인의 성명, 용모, 그 밖에 신고인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 또는 보도하거나,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명, 나이,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 또는 보도하지 못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피해아동측이 자발적으로 제보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 금지는 아동학대 및 2차 피해로부터 피해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보도 여부를 전적으로 피해아동 측의의사에 맡길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아동 측이 신원 및 사생활 노출 등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라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원할 수 있지만, 국가로서는 그 아동이 신원 노출과 같은 2차 피해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고 하여, 피해아동측이 원하는 경우에도 신고인, 고소인, 고발인,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의 공개 및 보도가 금지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 제20호중 : 헌법재판소 2022. 10. 27. 2021헌가4 결정문]

다. 한국기자협회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sup>3)</sup> (중 제21호중)

#### (1)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한국기자협회는 인권보도준칙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선언하면서, 인권을 침해한 경우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어린이와 청소년인권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상황과 관련한 사진과 영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20](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20)

#### 제7장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1.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 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 나.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한다.
2.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
  - 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 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 나.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다. 범죄 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는다.
  - 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상황과 관련한 사진과 영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 준칙 중 일부 발췌-

[중 제21호중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전문]

#### (2)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은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독립적 인격체로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며,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선언으로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는바,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III. 2차 피해 예방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는 물론이고 학대행위의심자로 지목된 사람도 보복이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 신고자, 학대행위의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직장, 직업, 성별, 나이 등의 인적 사항을 되도록 보도 내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정면을 묘사하는 사진·영상·음성·삽화 및 실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사진·음성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할 때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 학대행위의심자 등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또한 학대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영상·사진 등은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모방 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합니다.

한부모·양부모·이혼·입양·다문화 가정 등 피해자 또는 학대행위의심자의 가족 형태에 대한 상세한 보도는 사회적 차별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지양합니다. 종교, 국적, 체류 자격 등 피해자, 학대행위의심자의 신분을 특정하는 보도도 특정 계층·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길 수 있음을 고려합니다.

사건명에 피해아동의 이름을 붙이면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2차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도 해를 입을 수 있음에 유의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진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면 특정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부추길 수 있음을 유념합니다.

아동학대 정황·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학대행위의심자의 진술, 수사 기록 보도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중 일부 발췌-

[증 제22호증 :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전문]

#### 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우리나라 정부 역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아동학대 사건 보도시, 아동학대처벌법상 관련 법조문을 인용하며,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노출하는 등의 취재 및 보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사건 보도 권고 기준' 5가지원칙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4
아동학대 사건 취재 시, 언론이 준수해야 할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	5
아동학대 사건 보도 시, 언론이 지켜야 할 준칙을 지켜야 합니다. ....	6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	7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중 일부발췌-

[증 제23호증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 마.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취약성과 언론의 책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중매체의, 특히 타블로이드판 신문과 선정적인 신문은 충격적인 사건을 부각하고, 그 결과 아동, 특히 장애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낳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언론이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장애아동을 폭력성 있는 아동으로 묘사하고, 그에 따라 부추겨진 고정관념은 아동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강조하였습니다.<sup>4)</sup>

이 사건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다루었던 언론의 태도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경고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동의 연령과 발달적 특성 등은 전혀

4)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채택 일반논평 제13호.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제30항. 제30항. (CRC/C/GC/13, para. 30) (증 제24호증 참조)

고려되지 않은 채 단편적인 행위가 부각되었고, 이 와중에 아동의 장애 특성과 외모, 가족관계, 학교생활 등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아동의 문제적 행동’ 과 ‘가족의 문제적 행동’ 에 초점이 맞춰지고 비난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언론 등에 아동과 행위자와 관련된 일체의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그만큼 언론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자율 규제 메커니즘의 창출 및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주류 언론과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강화”<sup>5)</sup>하라고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의 책무는 정책 및 법·제도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언론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동참이 요구되며, 이는 아동학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더욱 민감한 아동권리 인식을 필요로 합니다.

언론이 스스로 갖는 영향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한, 사회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힘의 역동관계는 더 큰 힘을 가진 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보다 성인에게,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에게, 학생보다 교사에게 더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결과에 일조하지 않는다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 피고발인들의 아동학대 사건 보도가 엄격한 법의 잣대로 판단되어

---

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채택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18호. 유해한 관습. 제 81(g)항. (CRC/C/GC/18. para. 81(g)) (증 제24호증 참조)

야 할 이유입니다.

#### 마. 소결

강조하여 말씀드리건대, 피고발인들이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하고, 신고인의 성명, 용모, 그 밖에 신고인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 또는 보도하거나,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명, 나이,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 또는 보도하였다면, 아동학대처벌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어떠한 이유로든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각 피고발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방송 또는 보도의 필요성과 그 목적 등은 그 처벌의 정도를 정함에 고려할 수 있을 뿐임을 명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2 각 참조)

또한, 피고발인들은 각 취재나 방송 및 보도시 아동학대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방송 및 보도해야 함을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처벌법, 기자보도준칙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 방송 및 보도가 의료, 환경보도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취재영역이므로 아동에 대한 지식, 심리학, 상담학에 대한 지식, 철저한 인권의식, 윤리의식이 종합적으로 필요함을 잘 알고 있는 방송 및 언론의 책임자 및 종사자입니다. 각 피고발인들의 소위 ‘저널리즘’을 명목으로 한 동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피고발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완전히 면책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 3. 각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각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은 각 범죄일람표 1, 2와 같습니다.

### 4. 관련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피고발인들의 범죄에 관하여

피고발인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 헌법, 한국기자협회 및 정부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무엇보다도 아동학대처벌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하고, 신고인의 성명, 용모, 그 밖에 신고인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 또는 보도하거나, 피해 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명, 나이,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 또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이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를 하는 이유는 이 사건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의 부모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에 기인하는 바, 이 사건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의 부모가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sup>6)</sup>에 기대어, 관련 법령과 보도에 관한 준칙 등

---

6)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해아동측이 자발적으로 제보하여 보도하는 경우라도 국가로서는 그 아동이 신원 노출과 같은 2차 피해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별보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한 판시를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피해아동의 부모가 어떠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동학대처벌

을 모두 무시하며 신고인인 피해아동 부모의 성명과 사진을 노골적으로 노출하고, 사건과 무관한 내용도 포함하면서 비방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학교를 직간접적으로 특정하고, 피해아동이 전학을 가게 되는 것과 관련한 전학대상 학교의 소재지와 학사일정, 학급 특성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노출하고, 피해아동의 사진과 신고인인 피해아동 부모의 사진을 노출하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직위, 학교, 피해아동 부모와의 대화내용 등을 노출하는 등으로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 공판절차가 진행중에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매 절차마다 보도를 할 것이 예상되며, 그 보도방법 또한 기존과 다름없이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발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부모와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는 소위 ‘000 사건’으로 규정된 이 사건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방송과 언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 SNS 등을 통해 단순히 2차 피해로만 규정되기 어려운 수많은 연쇄피해를 거듭하여 입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상황은 (피고발인들의 처벌로서 모든 피해상황이 곧바로 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발인들의 이 사건으로 인한 처벌 이후에도 오랜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의사와 더불어 부모의 셰어런팅과 잊혀질 권리가 새롭게 논의될 정도로,

---

법상 금지되는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보도와 관련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거나,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저장·유통되는 각종 정보는 영구적인 파기가 어렵고 피해의 지속성과 파급력도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의 위법한 공개, 보도 및 방송으로 인하여 장애를 가진 피해아동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피해아동의 부모에 관하여, 이 사건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과 무관한, 예컨대, 피해아동이 학교에서 겪었던 다른 일들, 과거에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부모가 겪었던 일들, 각 이에 대한 (누군지도 모를) 주변인과 관련인들의 진술 등까지도 공개 및 보도함으로써 일종의 혐오표현들을 생성, 유통되도록 하여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부모에 대한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기도 합니다.

**6. 피고발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고, 추후 예상되는 각 피해자들의 피해상황 및 피고발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혐오표현 등 사회적 갈등 증폭**

**(1) 피해자들(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부모, 특수학급교사)의 피해상황**

이 사건 고발대상 피고발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어 그 자체만으로도 앞으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피고발인들은 피해자들(피해아동의 부모,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의 행동 및 피해아동 부모의 사회적 활동, 사생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극적 표현만을 발췌해 보도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였고, 이 사건 아동학대 사건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하더라도, ‘바지 내리기’, ‘고추 사타구니’가 검색되거나 피해아동의 장애와 관련된 상담내용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부모, 특수학급교사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많은 언론 및 방송매체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표기하면서도 그 내용을 보도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를 대량적으로 양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발인들의 자극적 보도를 통해 이 사건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인 9살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동은 이미 ‘때리고 성적인 행동을 일삼으며, 누구도 담임을 맡으려 하지 않는 파렴치한 가해자’로 사회적으로 각인되었고, 피해아동의 부모도 이전과 같은 사회적 활동을 하거나 평온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형사공판절차가 진행중인 이 사건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학급교사 역시 근무지, 직업, 아동에게 한 발언내용,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어 그 자체만으로도 앞으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형사공판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공소장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특수학급교사가 했다는 발언도 공공연히 공개가 되어, 해당 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자신의 인격권에 심각한 침해를 입었다 할 것입니다.

## (2) 피고발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혐오표현 등 사회적 갈등 증폭

피고발인들은 공정한 보도와 올바른 정보를 사용하고, 방송과 보도에 있어서 각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갈등과 차별이 조장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아동학대 사건을 장애아동의 교육 또는 통합교육의 구조나 개선할 점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심판대에 올리고 조리돌림 하듯이 특정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상만을 보도함으로써 자극적으로 비취지게 하고, 피해아동의 가족의 일상과 사생활을 보도하고, 주변인들과 비교하며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악성 댓글, 혐오표현, 장애인 비하 등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 표현들이 난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범행을 통해, 통상적인 법적절차를 통한 해결의 과정이 지나더라도, 즉, 이 사건 아동학대 사건이 어떤 결과를 통해 종결되더라도, 피고발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해당 법적절차와 함께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방송 및 언론의 다른 유사한 사안의 유사한 방송 및 보도에서, 하나의 과거 사례로서 사용될 것이며, 피해자들은

매우 오랜기간 그러한 잘못된 상황속에 놓여져 있을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 7. 결론

피고발인들이 인권보도준칙을 위반하고, 아동권리협약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피고발인들에게 부여되는 제재는 없거나 미미한 정도일 것입니다.

국내 1위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기존 제휴 언론사에 지급하던 뉴스 전재료(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 지급하는 뉴스사용료)를 폐지하고, 기사로 생기는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각 언론사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여러 언론사들이 기사 트래픽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기 위하여, 언론의 존재와 가치를 이루는 주된 요인들(공정보도, 품위유지, 올바른 정보사용, 사생활 보호, 갈등과 차별 조장 금지 등<sup>7)</sup>)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극적인 뉴스 양산에 나서고, 그를 통한 여러 가지의 명예훼손적·모욕적 보도가 있어 개별 피해자들이 해당 언론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더라도, 실제 대부분 사건에서 언론의 ‘공익적 목적’,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 아래, 피해자가 피해를 치유하기는 커녕 개별적으로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언론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경험들의 축적을 통해 더 자극적인 보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사회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7)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그러나, 이 사건 고발은 그 대상을 윤리강령 위반이라거나 인권보도준칙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한 행위자로 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피고발인들의 법령위반 행위가 명확한 만큼,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방송과 언론의 역할은 정확한 사실과 정보에 기반한 가치의 확산이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사실과 정보란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는 예방되어야 하며 발생시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 학대의심 사례의 발견과 신고 및 일련의 법적 절차는 아동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 마사 누스바움(M. Nussbaum)이 “평등한 존중의 가치가 제도와 개인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사회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취해야 할 보다 일반적인 과제”로 나르시시즘과 인간 혐오의 힘과 맞서 싸우는 것을 제시하였듯,<sup>8)</sup> 교권보호를 명목에 세운 채 그릇된 나르시시즘과 인간 혐오를 실천한 방송 및 언론에 강력히 맞서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본 건 고발에 대한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의 각 입법취지를 엄중히 고려하여, 모든 피해아동과 잠재적 피해아동의 현재와 미래의 법익을 보호하는 결정, 즉, 피고발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여 주

---

8) 마사 누스바움(2021).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577-579면 참조.

시기 바랍니다.

## 증거자료

- 증 제1호증 내지 19호증      각 별지 1. 2 기재 범죄일람표 참조
- 증 제20호증                    헌법재판소 2022. 10. 27. 2021헌가4 결정문
- 증 제21호증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전문
- 증 제22호증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전문
- 증 제23호증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 증 제24호증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채택 일반논평 제13호.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제30항. 제30항,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채택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18호. 유해한 관습. 제81(g)항.

## 참고자료

1. **참고자료 1** : SBS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부터 최종 검찰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각 결정통지 및 이유, 고발인의 이의 및 항고에 관한 고발자료 일체

1. **참고자료 2** 아동학대 관련 단체 및 대표자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부터 최종 검찰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각 결정통지 및 이유, 고발인의 이의 및 항고에 관한 고발자료 일체

2023. 10. 06.

위 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권은숙, 박민아, 서성민

경찰청 귀중

[별지 1. 범죄일람표] - 피고발인 1. 내지 7. 각 신문의 편집인 등

순번	피고발인	범행일시	범행내용	해당보도	비고
1	조선일보 편집인, 발행 인, 종사자(보 도기자)	2023. 7. 27.	- 아동학대처벌 법 제10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신 고인의 인적 사 항 또는 신고인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 법 제35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신 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 출 판물에 실음	2023. 7. 27. 자 조 선일보 “주호민 ' 자폐아들, 두려 움에 등교도 거 부...교사 언행 문 제 있었다”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7/26/Y7QVVRVXXFDH7IHDBN5FIUIPN4/?utm_source=naver&amp;utm_medium=referral&amp;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 n.com/national/nati onal_general/2023/ 07/26/Y7QVVRVXX FDH7IHDBN5FIUIP N4/?utm_source=na ver&amp;utm_medium= referral&amp;utm_cam paign=naver-news</a>	증 제1호증
2	중앙일보 편집인, 발행 인, 종사자(보 도기자)	2023. 7. 27.	- 아동학대처벌 법 제10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신 고인의 인적 사 항 또는 신고인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 법 제35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신 고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적사 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음	2023. 7. 27. 자 중 앙일보 “주호민, ' 특수교사 고발' 논란에 '자폐아들 등교 거부...충 격' ”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0494#home">https://www.joonga ng.co.kr/article/251 80494#home</a>	증 제2호증
3	동아일보 편집인, 발행	2023. 7. 28.	- 아동학대처벌 법 제10조 제3항	2023. 7. 28. 자 동 아일보 “웹툰작가	증 제3호증

	인, 종사자(보도기자)		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음	주호민 ‘교사가 훈육 넘어 아동학대 신고’, 자폐아들의 특수교사 ‘학대없어’ ... 재판 진행중”  <a href="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30728/120454454/1">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30728/120454454/1</a>	
4	한겨레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2023. 7. 30.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음	2023. 7. 30. 자 한겨레 “특수교사 ‘설리번 선생님도 아동학대 몰릴 것...맞는게 일상”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02288.html?_ga=2.96004636.1665082531.1695698475-1951225356.1692599912">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02288.html?_ga=2.96004636.1665082531.1695698475-1951225356.1692599912</a>	증 제4호증
5	경향신문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2023. 7. 27.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	2023. 7. 27. 자 경향신문 “ ‘아동학대’ 신고 논란에 입 연 주호민 ‘훈육이라 보기 힘들었다’ ”  <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271024001">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271024001</a>	증 제5호증

			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음		
6	매일경제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2023.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함</li> <li>-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음</li> </ul>	2023. 7. 27. 자 매일경제 “[단독] ‘학교 쑥대밭 만들고 줄행랑’ ...입장문 낸 주호민에 엄마들 분노 ‘”  <a href="https://www.mk.co.kr/news/society/10794879">https://www.mk.co.kr/news/society/10794879</a>	증 제6호증
7	한국일보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2023. 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함</li> <li>-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 행위자,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음</li> </ul>	2023. 8. 2. 자 한국일보 “ ‘진짜 밉상이네, 너 정말 싫어’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Print/A2023080211340004498">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Print/A2023080211340004498</a>	증 제7호증
8	살구뉴스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인)	-2023. 7. 26. -2023. 7. 27. -2023. 7. 29. -2023. 7. 29. -2023. 7. 30. -2023. 8. 1. -2023. 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li> </ul>	- 2023. 7. 26. 자 살구뉴스 “ ‘자폐아들’ 학대 신고->교사직위해제 시킨 ‘유명 웹툰작가’ 충격 정체... ‘이 사람	증 제8호증의 1 내지 13

		<p>-2023. 8. 2. -2023. 8. 22.</p>	<p>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 함</p> <p>- 아동학대처벌 법 제35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아 동 학 대 행 위 자, 피해아동, 신고 인의 인적사항 신문 등 출판물 에 실음</p>	<p>이라고?’ ”</p> <p><a href="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81">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81</a></p> <p>- 2023. 7. 27. 자 살구뉴스 “ ‘녹 음기로 증거 확 보해’ ... ‘주호 민’ 자폐 아들 학대반 특수반 교사 고소후 밝 힌 입장”</p> <p><a href="http://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00">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00</a></p> <p>- 2023. 7. 27. 자 살구뉴스 “ ‘너 교실 못가 알 아?’ 주호민 자 폐 아들 ‘아동 학대’ 논란의 진 실(+교사경위 서)”</p> <p><a href="http://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18">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18</a></p> <p>- 2023. 7. 29. 자 살구뉴스 “ ‘밥 도 못 삼키 고’ ... 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p>	
--	--	---------------------------------------	--	---	--

				<p>사’ , 심각한 현재 상태 공개되자 모두 충격”</p> <p><a href="https://www.salg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50">https://www.salg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50</a></p> <p>- 2023. 7. 29. 자살구뉴스 “ ‘이것까지 주물러’ ... 주호민, 자폐아들 성기노출-&gt;충격입은 여학생 ‘성교육’ 폭로 터졌다”</p> <p><a href="https://www.salg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53">https://www.salg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53</a></p> <p>- 2023. 7. 30. 자살구뉴스 “본능에 충실한 ‘주호민 아들’ ... ‘우리 동네로 온다고?’ ... 비상 걸린 초등학교 정체 공개됐다”</p> <p><a href="http://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67">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67</a></p> <p>- 2023. 8. 1. 자살구뉴스 “주호</p>
--	--	--	--	---

				<p>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밥그릇 잃은 특수교사’ 반전 근황 전했다”</p> <p><a href="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50">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50</a></p> <p>- 2023. 8. 1. 자살구뉴스 “자폐 아들 성기 노출 ‘주호민’, 피해자 코스프레?... 최악의 위기 맞았다(+아들학교)”</p> <p><a href="http://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25">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25</a></p> <p>- 2023. 8. 2. 자살구뉴스 “ ‘꼭 강력처벌 해주세요’ ...주호민아내, ‘문자 읽씹’ 하고 법정에서 남긴 소름돋는 한 마디”</p> <p><a href="http://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82">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82</a></p> <p>- 2023. 8. 2. 자</p>
--	--	--	--	---

				<p>살구뉴스 “ ‘파괴왕이 우리동네로 전학을?’ ... 주호민, 극성 학부모無 ‘여기 초등학교’ 로 아들 보낸다”</p> <p><a href="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89">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89</a></p> <p>- 2023. 8. 3. 자 살구뉴스 “ ‘교장선생님이 신고 하라고’ ... 주호민이 공개한 녹취록에 담긴 충격 진 실 (+ 총 정 리) “</p> <p><a href="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21">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21</a></p> <p>- 2023. 8. 22. 자 살구뉴스 ” ’ 저 말고 이분께 써 주세요 ‘... 주호민에 고발당해 1,800만원 받은 ’ 특수교사 ‘, 모두를 울렸다 “</p> <p><a href="http://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93">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93</a></p>	
--	--	--	--	--	--

				<p>- 2023. 8. 28. 자 살구뉴스 ” ’ 녹음파일 전체 내용 공개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재판 재개, 숨겨진 진실에 모두 경악 “</p> <p><a href="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60">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60</a></p>	
9	뉴스어몽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인)	2023. 7. 31.	<p>-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p> <p>-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문 등 출판물에 실음</p>	<p>2023. 7. 31. 자 뉴스어몽 “주호민 아들, 성추행 등 학교폭력 일삼아.. 하지만 아빠가 주호민이라 괜찮아?”</p> <p><a href="https://www.newsmo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5">https://www.newsmo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5</a></p>	증 제9호증
10	아티브 뉴스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인)	2023. 7. 27.	<p>-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p> <p>- 아동학대처벌</p>	<p>2023. 7. 27. 자 아티브뉴스 “주호민 한수자 자폐아들 특수반 교사 신고, 고기초 학부모들 빠친 이유(난동, 동료교사, 인스타)</p> <p><a href="https://www.artive news.co.kr/news/ar">https://www.artive news.co.kr/news/ar</a></p>	증 제10호증

			법 제35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아 동 학 대 행 위 자 , 피해아동, 신고 인의 인적사항 신문 등 출판물 에 실음	<a href="#">ticleView.html?idxn o=104</a>	
--	--	--	--	---	--

[별지 2. 범죄일람표] - 피고발인 11. 내지 19. 각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등

순번	피고발인	범행일시	범행내용	해당보도	비고
11	MBC 뉴스데스크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 (보도기자)	2023.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li> <li>-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 행위자,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방송함</li> </ul>	<p>2023. 7. 27. 자 MBC 뉴스데스크 “주호민, 교사 ‘아동학대’ 신고로 논란..교사 ‘특수학급 벗어나려 해 타일렀을 뿐”</p> <p><a href="https://imnews.1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8354_36199.html">https://imnews.1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8354_36199.html</a></p>	증 제11호증
12	SBS 8뉴스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	2023. 7.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li> <li>-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li> </ul>	<p>2023. 7. 31. 자 SBS 8뉴스 “ ‘주호민에 피소’ 특수교사 복직..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90457#openPrintPopup">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90457#openPrintPopup</a></p>	증 제12호증

			방송합		
13	KBS 뉴스광장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 (보도기자)	2023. 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li> <li>-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방송함</li> </ul>	2023. 8. 1. 자 KBS 뉴스광장 “웹툰작가 주호민이 신고했던 ‘직위해제’ 교사 오늘 복직”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37346">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37346</a>	증 제13호증
14	JTBC 뉴스룸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 (보도기자)	2023.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li> <li>-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방송함</li> </ul>	2023. 7. 27. 자 JTBC 뉴스룸 “주호민,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논란 커지자 ‘단순 훈육 아니었다’ ”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7081">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7081</a>	증 제14호증
15	MBN 뉴스7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	2023.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li> </ul>	2023. 7. 27. 자 MBN 뉴스7 “아동학대 우려에 ‘녹음기 등교’ 논란... ‘교권 침	증 제15호증

			<p>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p> <p>-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방송함</p>	<p>해' vs '공익 목적' ”</p> <p><a href="https://www.mbn.co.kr/news/society/4950380">https://www.mbn.co.kr/news/society/4950380</a></p>	
16	채널A 뉴스A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 (보도기자)	2023. 8. 1.	<p>-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p> <p>-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방송함</p>	<p>2023. 8. 1. 채널A “웹툰 작가 주호민이 고소했던 교사 7개월 만에 복직”</p> <p><a href="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59777">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59777</a></p>	증 제16호증
17	TV조선 뉴스9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 (보도기자)	2023. 8. 2.	<p>-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p> <p>-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p>	<p>2023. 8. 2. 자 TV 조선 “ ‘ 고 소 논 란 ’ 웹툰작가 주호민 ‘특수 교사들께 죄 송...선처 탄원 서 낼 것’ ”</p> <p><a href="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8/02/2023080290198.ht">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8/02/2023080290198.ht</a></p>	증 제17호증

			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방송함	<a href="#">ml</a>	
18	연합 뉴스 TV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 (보도기자)	2023.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li> <li>-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방송함</li> </ul>	<p>2023. 7. 30. 자 연합 뉴스 TV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논란 일파만파... 방송가도 ‘눈치’ ”</p> <p><a href="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730006300641?input=1825m">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730006300641?input=1825m</a></p>	증 제18호증
19	YTN뉴스 편집 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	2023.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li> <li>-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방송함</li> </ul>	<p>2023. 7. 27. 자 YTN 뉴스 “주호민 ‘교사 신고’ 논란에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 ”</p> <p><a href="https://www.ytn.co.kr/ln/0106_202307271011253223">https://www.ytn.co.kr/ln/0106_202307271011253223</a></p>	증 제19호증